

1996. 12. 6.

Mc.c.3  
- 1 -

## 3당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1996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여성평화의집 회의실

---

■ 주최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

# □ 순 서 □

사회 : 남인순(南仁順)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 개회

## ■ 참석자 소개

## ■ 경과보고

## ■ 3당 가정폭력방지법안과 범국민운동본부안 비교분석

: 신혜수 (申蕙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내는 건의문 체택

: 지은희 (池銀姬)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경과 보고 □

###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및 각 정당의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1996년 10월 18일)

\* 1996년 10월 21일 기자간담회 이후 추진된 일정

- 1) 국민회의 72명 의원명의로 가정폭력방지법안 제출 (10/24)
-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내부 설명회(10월 29일)  
: 범국민운동본부 가입단체 대표자에게 국회에 청원할 법안 설명 및 향후 활동계획 공유
- 3) 가정폭력방지법안 청원서 접수(10월 30일)  
: 이미경 대표 소개의원외 19인(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지은희, 신혜수, 김창국외 86,555명으로 청원함
- 4)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11월 5일)
- 5)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한마당(11월 9일)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시낭송, 퍼포먼스, 가정평화를 위한 작은콘서트, 한풀이춤, 시민대행진 등 시민들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가졌다.
- 6)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보내기(11월 ~ 12월)  
: 서울, 인천, 성남, 전북, 원주, 경남, 대구, 제주, 청주 등 각 지역운동본부 가입단체 회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22개 단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일조정안을 촉구하는 엽서보내기를 전개하고 있다.
- 7) 신한국당 '가정폭력방지법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개 법률안 제출하다.(11월 23일)
- 8)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요청(11월 26일)  
: 국회 여성특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신한국 3, 국민회의 1, 민주당 1)를 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다.
- 9) 자민련 48명 의원 명의로 '가정폭력방지법안' 제출(11월 28일)
- 10) 3당 대표 면담(11월 29일 ~ 12월 4일)  
: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11월 3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12월 1일),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12월 4일)를 면담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4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초당적인 차원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만들 것을 요청하다. 신한국당에서는 법사위를 통해 내용적으로 조정하겠지만 법 형식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민회의는 총무회담을 통해 조정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자민련도 조정안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 각 정당 및 국민운동본부 가정폭력방지법안 항목별 비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96.12.6)

## 1. 구성의 비교

먼저 각 법안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특별법안에 있어 국민운동본부 안, 국민회의, 자민련안은 각기 단일한 가정폭력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이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안에서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분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각 법안의 비교표이다.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특례법)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구 성 장	해당조	구 성 장	해당조	구 성 장	해당조	구 성 장	해당조
1장 총칙	1-9	1장 총칙	1-3	1장 총칙	1-5	1장 총칙	1-5
2장 가정보호사건	10-35	2장 형사사건	4-12	2장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	6-44	2장 가정보호사건	6-34
3장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36-46	3장 가정보호사건	13-56	3장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45-57	3장 형사사건	35
4장 벌칙	47-50	4장 벌칙	57-59	4장 보칙	58-60	4장 상담소 및 보호시설	36-46
5장 부칙		5장 부칙		5장 벌칙	61-65	5장 보칙	47-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6장 부칙		6장 벌칙	51-53
		총 20조와부 칙으로 구성				부칙	

## 2. 법체계에 대한 비교

신한국당 안을 제외한 3개안은 모두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과 보호를 함께 담은 통합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나이 법률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한국당이 제출한 법의 명칭이 '방지법'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모두 담겨 있어 내용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성격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모든 조치가 가정폭력 발생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과 보호, 예방적인 사전적 조치와 사후 처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범죄에 비교하여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고 관계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하나만이 통과 된다면 이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고 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일반 국민의 저항도 상당할 것이다.

신한국당은 2개의 법체계에 대한 근거로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처벌과 예방, 피해자보호, 등이 함께 있음과 주무관서가 여러 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해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 피해자에 상담이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구체성의 결여, 세부규칙의 부재등이 더욱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성폭력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관한 홍보,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교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등이 더욱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시행해온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과 보호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세부항목의 비교

### 1) 총칙

#### (1) 목적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비교 분석	각안은 공통적으로 법안의 목적으로 가정폭력 행사자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한 견전한 가정의 육성을 들고 있다. 목적면에 있어서 각안은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2) 가족구성원 정의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가족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li> <li>-사실혼 관계 및 그 관계에 있던 자</li> <li>-자기 또는 배우자의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li> <li>-계부모자, 적모서자 관계에 있는 자</li> <li>-기타 동거친족 포함 동일 세대 구성원 관계에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배우자</li> <li>-사실혼 관계 및 그 관계에 있던 자</li> <li>-자기 또는 배우자의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li> <li>-계부모자, 적모서자 관계에 있는 자</li> <li>-기타 동거친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배우자</li> <li>-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li> <li>-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li> <li>-기타 동거친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배우자</li> <li>-사실혼 관계 및 그 관계에 있던 자</li> <li>-자기 또는 배우자의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li> <li>-기타 동거친족</li> </ul>
비교 분석	<p>가족구성원의 정의에 있어 국민운동본부 안이 가장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중요한 차이점은 <u>전배우자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포함 여부</u>인데 국민운동본부 안을 제외하고 모든 안에 가정폭력加害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배우자가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p> <p><u>한국적인 정서상 아이들 아버지를 형사고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정의에 전배우자가 포함되어 처벌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u></p> <p>외국 경우에도 가족구성원에 전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p>			

(3) 가정폭력의 정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가정 폭력의 정의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사이의 신간의 육체적 또는 정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행위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조 제1,2항, 제260조 해) 제1,2항, 제258조(중제1,2항(폭행, 존속폭 상해), 제260조(폭행, 존행), 제271조 제 1,2항 속폭행) 제1,2항, 제261(유기, 존속유기), 제 조(특수폭행), 제264조 273조 제1,2항(학대, 존(상습범), 제271조(유기 속학대), 제274조(아동, 존속유기) 제1,2항, 제2 혹사), 제276조 제1,272조(영아유기), 제273 항(체포, 감금 및 존속 조(학대, 존속학대), 제2 체포, 존속감금), 제283 74조(영아혹사), 제276 조 제1,2항(협박, 존속 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277조(중손), 제311조(모욕), 체포, 중감금, 존속증체 제321조(신체 수색), 포, 존속증감금), 제278 제324조(폭력에 의한 조(특수체포, 특수감금) 권리행사방해), 제350, 제279조(상습범), 제28 조(공갈), 제366조(손 0조(미수범), 제283조 괴), 아동복지법 제18(협박, 존속협박) 제1,2 조 제2,5호, 폭력행위 항, 제284조(특수협박), 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3조 소정의 행위 제285조(상습범), 제286 조(미수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4조(강간)의 죄 또는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행위	@ 국민운동본부 안은 신한국당 안에 비해서 형법 제264, 279, 285조(이상 상습범 규정), 제280, 286조(이상 미수범 규정), 제258, 261, 272, 277, 278, 284, 308, 309조 조항이 빠져 있다. @ 신한국당 안은 국민운동본부 안에 비해서 형법 제321조(신체수색), 제350조(공갈), 제366조(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가 빠져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57, 258, 260, 261, 271, 272, 273, 274, 276, 277, 278, 283, 284, 307, 309, 311, 321, 324, 350, 366조, 아동복지법 제18조,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3조, 성폭력범죄자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행위	
단순 비교		@ 국민회의 안은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 자민련 안은 신한국당안에 비해 264, 279, 285조(이상 상습범 규정), 280, 286조(이상 미수범),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이 빠져있고 자민련 안만이 성폭력특별법 제 7조(친족관계에 대한 강간)를 포함시키고 있다.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안	국민회의안	자민련안
가정폭력의 정	국민운동본부안은 신한국당안에 비해서 제 258조(중상해), 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 범), 제272조(영아유기), 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 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가 빠졌다.			
비교 분석	258, 261, 264, 272, 277, 278, 284조는 그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기 보다는 일반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였다. 또한 308, 309조 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신한국당안은 국민운동본부안에 비교하여 제321조(신체수색), 제 350조(공갈), 제 366조(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등이 제외 되었다. 그러나 제 321조 신체수색등은 남편이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서 많이 쓰이는 폭력이고 제 350조 공갈은 노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에 노인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여 노인들에게 크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또한 제 366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역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고 행동의 제약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 (4) 가정보호위원회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가정 보호 위원회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중앙가정폭력 방지위원회를, 시도에 지방가정폭력 방지위원회를 각각 설치 -가정폭력 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명시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중앙가정폭력 방지위원회를, 시도에 지방가정폭력 방지위원회를 각각 설치 -가정폭력 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명시	
비교 분석	국민운동본부안과 국민회의안에는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임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안과 자민련안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5) 신고의무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신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li> <li>-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한 교원 및 교육기관의 장</li> <li>-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 의료기관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장이나 보조자는 고발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li> <li>- 교원, 교육기관대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는 의무신고</li> <li>- 상담소상담원은 내담자 동의시 신고</li> </ul>

비교 분석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조기 발견은 가정폭력을 줄이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나마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신한국당안은 가정폭력상담소, 아동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고발의무를 주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담소가 준 사법적 권한을 갖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별도 조항도 없는 유명무실한 고발의무를 없애고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 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신고의 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고소고발 특례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고소 고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 2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고소·고발 가능</li> <li>- 피해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고소·고발 가능</li> <li>- 피해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고소·고발 가능</li> <li>- 피해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li> </ul>
비교 분석	각 안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수사과정에서의 긴급처분의 청구 및 발부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긴급 처분	<p>제8조 ① 폭력행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중 가정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p> <p>-검사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명령을 관할 법원에 청구</p> <p>-1. 10일 이내의 2일 단위의 단계별 임시퇴거명령</p> <p>-2. 10일 이내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거리에서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금지명령</p> <p>② 폭력행위자가 제1항 제1호, 제2호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0일 이하의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 가능</p> <p>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폭력행위자로부터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폭력의 피해를 받거나 재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명하여 위 제1항의 긴급처분을 요청 가능</p>	없음	<p>제12조 (퇴거명령)</p> <p>① 폭력행위자가 상습적이거나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을 때</p> <p>-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p> <p>-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p> <p>- 24시간 이내에 담당판사에게 행위자에게 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하게 하는 명령을 신청가능</p> <p>② 10일이내의 퇴거명령</p> <p>③ 신청서에 행위자의 성명, 주거,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개요, 가정상황, 퇴거명령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p> <p>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급박하거나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송의 방식 가능</p> <p>기재하고 담당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없음

⑤ 위 제1항의 각 처분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를 폭력행위자에게 집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그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담당판사는 퇴거명령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그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퇴거명령서에는 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의 기간 중 담당판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 담당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⑦ 퇴거명령은 이를 신청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위해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비교  
분석

수사과정에서의 긴급처분은 가정폭력의 특성상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2) 가정보호사건

### (1) 가정보호사건의 범위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가정보호사건 의 범위	제10조 1. 제3조 제1호 소정으로의 송치) 의 가정폭력사건 중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를 경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신고권자가 가정보호사건 담당하는 판사가 검찰 송치 인정한 때 결정을 한 사건을 제2항 소정의 범죄에 관한 사건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한 사건 ②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검사는 폭력행위자를 수사한 결과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기소 가능	제 7조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①검사가 제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를 경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신고권자가 가정보호사건 담당하는 판사가 검찰 송치 인정한 때 ②법원이 제 2조 제1항 소정의 범죄에 관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로 결정한 사건 ③검사 또는 법원은 제 2조 제1항 형사처벌을 회망하는 소정의 범죄 이외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 ④검사나 법원은 제1항, 제2항의 송치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	제7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가정폭력을 행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권자가 가정보호사건 담당판사가 당해 사건을 검통한 결과 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로 결정한 사건 1. 피해자가 행위자를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고소 또는 신고하면서 고 인정하여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회망하는 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 ③ 일반 형사법원이 제2조제1호 소정의 폭력행위자를 조사 또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건 2. 담당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이송 ④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한 사건	제 6조(가정보호사건의 범위) ①제2조제1호 소정의 가정보호사건 중 가정보호사건 담당판사가 당해 사건을 검통한 결과 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건 ② 검사가 제2조제1도 조한 결과 보호처분에 조한 결과 보호처분에 송치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건 1. 피해자가 행위자를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고소 또는 신고하면서 고 인정하여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회망하는 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 ③ 일반 형사법원이 제2조제1호 소정의 폭력행위자를 조사 또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건 2. 담당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이송 ④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한 사건

신한국당안은 현장 사건중에서만 가정보호사건을 다룰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가 수년간 계속되는 범죄행위이고 피해자가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에 의해서 가정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를 얻고 싶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폭력가해자를 보호처분을 통해서 교정, 교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교  
분석

국민회의 안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명시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가해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음으로 피해자 의견을 참조하되 사법절차 처리 기준에 맞추어 가정보호사건,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2) 관찰

분류	국민운동본부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비교 분석	관찰에 있어 각 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가사부에 속하는 것에 있어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			

## (3)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응급 조치	-사법경찰관리의 임무를 명시 - 조사,증거수집 - 피해자를 상담소나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가중처벌 통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의 권고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작성 및 관찰검찰에의 즉시 송부	-행위자·피해자 격리 -피해자 의료기관, 관련보호시설 인도 -아동, 노인의 경우 해당 상담소 및 복지 시설에 인도	-경고발언 -폭력 행위 제재 -의료기관 이송 -피해자 보호시설 이송 -긴급시 행위자를 경찰서로 체포 동행(24시간 이내)	-조사,증거수집 -행위자·피해자 격리 -피해자 의료기관, 관련보호시설 인도 -아동의 경우 아동상담소 및 관련보호시설 인도 -보고서 작성 관찰법원에의 송부
비교 분석	각 안은 응급조치에 있어서 격리, 피해자의 의료기관이나 관련보호시설로 인도 등에 있어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안은 경찰의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임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 (4) 조사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조사	<p>-조사: 관찰 경찰서장 (담당: 검사), 법원 가사부 조사관 -수사종결: 30일 이내</p>	<p>-조사: 법원 가정보호 사건조사관 -법원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기타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가능</p>	<p>-조사: 법원 조사관, 사법경찰 -법원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 가, 기타 전문가에게 조사의뢰 가능 -수사종결: 10일 이내</p>	<p>-조사: 사법보좌관 -법원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 가, 기타 전문가에게 자문 가능</p>
비교 분석	<p>조사에 있어 각 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조사담당자에 있어 국민운동본부안은 관찰 경찰서장을 들고 있으나, 다른 안은 법원조사관(자민련-사법보좌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종결기간에 있어서 국민운동본부안은 30일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안은 10일이내를 그리고 나머지 안은 기일에 대한 명시가 없다. 기일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일반 소송사건의 예를 따를 것인데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가정복귀를 시도한다는 입장에 배치됨으로 기일을 현실적인 선에서 명기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p>			

#### (5) 동행영장의 발부 및 집행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安	자민련 안
영장 발부 및 집행	<p>-발부: 법원 -집행: 사법경찰</p>	<p>-발부: 법원 -집행: 가정보호조사관</p>	<p>-발부: 법원 -집행: 법원조사관, 사법경찰</p>	<p>-발부: 법원 -집행: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사법경찰</p>
비교 분석	<p>집행의 주체에 있어 국민운동본부안은 사법경찰을, 다른 안에서는 조사관을 들고 있다. 신한국당외 두 정당안에서는 조사관 이외 사법경찰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p>			

#### (6) 보조인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보조인	<p>-피해자보조인: 기정폭력상담소장, 피해자보호시설장, 관련의료기관·교육 기관장 및 그 지정을 받은 조사원, 변호사 -아동, 60세 이상, 정신 지체, 기타 정상 판단 능력 결여자: 독립 하여 피해자 보조 가능</p>	<p>-가해자보조인: 변호사</p>	<p>-가해자, 피해자 보조 인: 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 선임 변호사 -피해자가 미성년 자, 70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 인, 일 때 국선변호사 선임</p>	<p>-가해자보조인: 변호사 -피해자보조인: 기정폭력상담소장, 피해자보호시설장, 관련의료기관·교육 기관장 및 그 지정을 받은 조사원, 변호사 -아동, 60세 이상, 정신 지체, 기타 정상 판단 능력 결여자: 독립 하여 피해자 보조 가능</p>

비교 분석	<p>국민운동본부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안에는 가해자의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u>신한국당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조인에 대한 규정이完全没有。</u> 보조인조항을 만든 것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여 만든 조항이므로 피해자 보조인이 꼭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규정된 장애인이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이후의 전 과정(수사, 재판 등)에서 수화통역이나 첨역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인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

#### (7)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보호 처분 종류 와 내용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6개월이내</li> <li>-접근금지명령</li> <li>:6개월이하</li> <li>-친권행사제한 및 친권행사자 지정명령</li> <li>-금전지급명령</li> <li>:부양료, 손배 및 보상</li> <li>-상담 및 수강명령</li> <li>:100시간 이하</li> <li>-사회봉사명령</li> <li>:180일이내 300시간 이하의 노무</li> <li>-단기격리처분</li> <li>:6개월내 교도소· 구치소 수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1년범위내</li> <li>-접근금지명령</li> <li>-친권행사제한명령</li> <li>-보호관찰명령</li> <li>-사회봉사·수강명령</li> <li>:100시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1년범위내</li> <li>-접근금지명령</li> <li>:단기30일, 장기180일</li> <li>-양육금지명령</li> <li>:단기6월, 장기3년</li> <li>-처분금지명령</li> <li>:단기1년, 장기3년</li> <li>-인도명령</li> <li>-손해배상명령</li> <li>-부양료지급명령</li> <li>-상담, 수강명령</li> <li>:최저10시간, 최대100</li> <li>-감치·치료명령</li> <li>:단기1월, 장기3년</li> <li>-사회봉사명령</li> <li>:최저50시간, 최대100</li> <li>-보호관찰명령</li> <li>:단기6월, 장기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6개월범위내</li> <li>-접근금지명령</li> <li>-친권행사제한명령</li> <li>-보호관찰명령</li> <li>-입원명령</li> <li>-치료요양지급명령</li> <li>-처분금지명령</li> <li>-상담, 수강명령</li> <li>:100시간 이내</li> </ul>
비교 분석	<p>보호처분의 기간에 있어 국민운동본부안과 자민련안은 6개월을, 나머지 안은 1년을 상정하고 있다. 가정복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처리와 함께 보호처분의 기간 역시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p> <p><del>또한</del> 신한국당안은 양육비, 생활비 지급내용에 없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없이는 가정보호처분을 이용할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접근금지, 퇴거명령과 함께 반드시 금전지급 명령이 있어야 한다.</p>			

### 3) 상담소 및 보호시설

#### (1) 상담소의 설치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상담소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필요사항: 대통령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필요사항: 대통령령
비교 분석	상담소 설치에 관해 자민련안 만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나머지 안은 신고사항으로 정하였다. 가정폭력의 발견과 상담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담소의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운동본부안과 자민련안이 설치에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데 비하여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보호시설의 설치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보호 시설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필요사항: 대통령령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필요사항: 대통령령
비교 분석	국민운동본부안과 국민회의에서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2개 안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운동본부안과 자민련안이 설치에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데 비하여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유사명칭 사용금지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유사 명칭	없음	상담소나 보호시설 이 아니면 사용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아니면 사용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아니면 사용금지
비교 분석	국민운동본부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나머지 안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아니면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정폭력을 상담해온 단체들이 모두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활동할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상담소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등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모두 새로운 상담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병폐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 여성, 아동, 노인을 포함한다고 할 때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온 민간단체의 활동은 크게 제약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4) 벌칙

### (1) 가정보호 불이행죄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가정보호 처분 불 이행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년이하의 징역 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무고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교 분석	국민운동본부는 2년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민련안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안은 이보다 무거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민회의는 무고죄를 침부하고 있다.			

### (2) 사법 경찰관리가 의무 불이행

분류	국민운동본부 안	신한국당 안	국민회의 안	자민련 안
사법경 찰 관리 가 의무 불이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없음	사법경찰관리로서 가정폭력의 신고 또는 신고를 받고도 제 11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교 분석	국민운동본부 안과 국민회의 안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벌금 및 징역등 벌칭 조항이 있으나 신한국당과 자민련 안에는 벌칙 조항이 빠져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현재 가정폭력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는 반드시 사법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가정폭력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 □

###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15대 국회는 각 당이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법률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법사위원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쓸리는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지은희, 신혜수, 김창국 외 86,555명 명의로 이미 경 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3당이 모두 의원 입법으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모두 4개의 법안이 법사위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그동안 일선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해 온 여성·장애인·노인·아동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각 당과 범국민운동본부에서 4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자칫 작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공전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1. 각 정당은 그동안 일선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해 온 여성·장애인·아동·노인 단체와 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되어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각 정당은 법률형식과 내용 모두를 포함해 당의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상호 양보하여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